

Samil Commentary

September 17, 2019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세무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최신 세무예규판례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8.14.)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동 세법개정안은 8월 29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음.

2019년 세법개정안의 부처협의·입법예고 결과 당초 개정안의 주요 수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조의6)

당초 안	확정 안
<p><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 기한 1년 연장</p> <p>- (공제율) 대. 중견. 중소기업 3.7. 10% → 1.3. 7%로 인하</p> <p>- (적용 기한) '19.12.31.에서 '20.12.31.로 1년 연장</p>	<p><input type="checkbox"/> 적용 기한 추가 연장 (좌 동)</p> <p>- (적용 기한) '19.12.31.에서 '22.12.31.로 3년 연장</p>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당 초 안	확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의 범위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관세 추가	<input type="checkbox"/> 국세의 범위 현행 유지 - 관세 삭제

<수정이유>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할 예정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 (국조법 §12)

당 초 안	확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1억원 →3억원)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 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③ ①, ②에 따른 과태료는 합하여 최 대 3억원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상한 합리화 ①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1억원) ②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삭제 >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국조법§31의4①)

당 초 안	확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2천만원 → 3천만원	<input type="checkbox"/>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 2천만원 → 3천만원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 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조특법§제 13 조의 3 신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함. 또한,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 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제 18 조 개정)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 단, 소재, 부품, 장비 기술자 외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적용기한인 2021.12.31.까지만 적용함.

「세무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2015 헌가 19 등)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

주요 개정 내용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여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17.12.26.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즉, 변호사가 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를 포함한 이론교육과 현장연수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 위임함.

최신 세무예규판례

[국승]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존부

말레이시아 소재 외국법인과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몰취)된 경우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에는 위약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지급'에는 국내에서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등도 포함되므로 매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함. (대법 2017 두 38645, 2019. 7. 4.)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소득의 '지급'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승] 특수관계 없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이번 사건의 원고와 원고의 이사들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A의 주식 및 A에 대한 경영권과 위 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일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 양도하고 각자가 양도한 주식 수 비율대로 양도대가를 나누어 가졌음. 이 경우 원고가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원고의 이사들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9 호는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2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 제 52 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행위유형 규정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고 설시함. 즉, 원고의 이사들이 양도대가 중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받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하여 구 법인세법 제 52 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9 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함. (대법 2016 두 54213, 2019. 5. 30.)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9 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긍정한 사례로써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 국제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금융세무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 · 스타트업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정선홍 709-0937 sun-heung.jung@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최혜원 709-0990 hyewon.choi@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상속증여&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